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군에서 의형의 집행 및
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방부장관은 군교도관 등 「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업무 종사자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,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(軍司法) 관련 서비스 포털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,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 설치 부대의 장, 군교도관 등이 정보시스템 등을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, 해당 시스템의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(안 제4조의2)

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,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

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, 군검찰,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.

나.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(안 제4조의3)

군교정업무 종사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(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)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 · 폐지 등, 없음

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편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) ① 국방부장관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·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(군에서 작성, 취득, 저장, 송신·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데이터베이스, 네트워크,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하며, 이하 “군사법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해야 한다.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(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, 문자, 음성,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)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(이하 “정보포털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장은 법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교도관이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을 관련 업무에 활용

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운영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.

제4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방부장관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장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군사법정보시스템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
2. 정보포털: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) ① 국방부장관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·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(군에서 작성, 취득, 저장, 송신·수신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데이터베이스, 네트워크,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하며, 이하 “군사법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해야 한다.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(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, 문자, 음성,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)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(이하 “정보포털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</u>

<신 설>

수 있다.

② 소장은 법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교도관이 군사법 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을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 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운영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.

제4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방부장관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장은 군사법 정보시스템의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군사법 정보시스템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

	<u>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</u> <u>2. 정보포털: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</u>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 - 6811